

관할하는 행정시를 각각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시·군·구로 본다.

		해당
		시·도의
	제75조제2항 제6호에 따른 시·도별 지방소비 세액	소비지수 × 해당 시·도의 × 가중치 각 시·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
	= 안분액 중 시·도 안분액의 합계액	

7.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
가. 각 시·군·구의 안분액: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

나. 각 시·도 교육청의 안분액: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

7. -----

---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

가. 각 시·군·구의 안분기준: 제6호의2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·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·군 및 자치구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른 산정.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를 각각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시·군·구로 본다.

나. 각 시·도 교육청의 안분기준: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